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6383

제출연월일 : 2022. 9. 2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의 대부분이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의 필요성, 중요성 및 안건발생 건수가 적어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운영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6조 ~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제1항(※ 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) 대 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 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 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1.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. 기존 행정정보통신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	개 정 안 <u><</u> 삭 제>
4.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. 시 관계 공무원 3.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	<삭 제>
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콜 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.
- 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 -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 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① 그 밖에 회의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 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삭 제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개정안은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행정국 소통민원과장 진수일